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시행

---

1. 2016년도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과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나. 공사내용 :

① 청과시장동

㉠ RC부재

- 균열보수(0.3mm이상, 주입식) 262.3m
- 균열 및 누수,백태,누수흔적(0.3mm이상, 충전식 균열보수) : 9.5m
- 철근노출(단면복구) 18㎡
- 기동콘크리트 단면손상(단면복구) 1㎡

㉡ PSC부재

- 균열보수(0.6mm초과, 충전식) 54.4m
- 콘크리트 박락 및 들뜸(단면복구) 44.9㎡
- 균열 및 누수,백태,누수흔적(0.6mm초과, 충전식 균열보수) : 2m
- 철근노출(단면복구) 17.9㎡
- 기동콘크리트 단면손상(단면복구) : 1.6㎡
- 기동 철판 보수부 들뜸(단면복구+철골재철거) : 0.4㎡

② 수산시장동

㉠ RC부재

- 균열보수(0.3mm이상, 주입식) 5.6m
- 철근노출(단면복구) 25㎡

㉡ PSC부재

- 균열보수(0.6mm초과, 충전식) 72.1m
- 콘크리트 박락 및 들뜸(단면복구) 3.8㎡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소요예산 : ₩ 92,400,000 원정 (VAT포함)



## 붙임 #1

# 공사 개요

◎ 공사명 :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 1. 공사집행 상황

#### 가. 총 공사규모

1)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가락시장 內

2) 공사내용 :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

나. 기 집 행 액 : 205,715천원

다. 책정된예산액 : 436,174천원

라. 금회예산배정액 : 92,400천원

마. 금 회 집 행 액 : 92,400천원

바. 집 행 잔 액 : 137,059천원

사. 향후 집행계획 : 137,059천원 (가락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지출)

2. 설계자 소속 : 시설안전팀 직 4급 고정일

3. 설계심사자 소속 : 시설안전팀 직 부장 성명 신종철

4. 감독원 소속 : 시설안전팀 4급 고정일

5. 검사원 소속 : 시설안전팀 직 부장 성명 신종철

시설안전팀 직 팀장 성명 정우철

6.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기간 : 계약금액의 3/100, 3년간

7. 지체 상금율 : 0.<sup>5</sup>/1000

8. 설계서 열람장소 : 가락시장 시설안전팀

**붙임 #2**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예정공정표

(단위:일)

공 종	일 정	착공일로부터										비 고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1. 인원 및 자재준비		■	■	■								
2. 청과시장동					■	■	■	■				
3. 수산시장동									■	■	■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

· 사 무 실 : ☎ (02) 2133-7777  
FAX 768-8846

**2018년 7월 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 장	박 현 출
계약부서	경영본부장	김 종 근
	재무팀장	김 이 종
	계약담당	류 종 수
발주부서	건설안전본부장	김 승 호
	시설안전팀장	정 우 철
	감독담당	고 정 일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서울시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붙임 #5**

**청렴이행심사점검표(사업부서용)**

제 목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시행		분 야	계 약	
관련 문서	• 기획팀-47호(2018.1.8.) “2018년 투자사업 사전심사제도 운영 안내”		부서명	시설안전팀	
개 요	• 2016년도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시행				
질문내용		응답내용	선택	검 토 의 견	
계 약 관 련	1. 계약방법의 적정성	① 적정 ② 판단 곤란 ③ 적정하지 않음	√	○ 관련규정에 따른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적정	
	2. 사전심사 대상여부	① 대상임 ② 해당사항 없음	√		
	3. 계약조건 및 계약서 내용의 적정성	① 적정 ② 일부 적정 ③ 적정하지 않음	√		○ 적정함
	4. 소요예산 산출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① 적정 ② 일부 적정 ③ 적정하지 않음	√		○ 계약예규에 따른 공사원가계산
사 업 추 진 관 련	1. 목적 및 추진 방향의 적정성	① 적정 ② 일부 적정 ③ 적정하지 않음	√	○ 시설물 안전관리	
	2. 추진시기의 적합성	① 적합 ② 판단 곤란 ③ 적합하지 않음	√	○ 시설물 안전관리	
	3. 세부추진 계획의 현실성	① 현실성 높음 ② 일부 실현 가능 ③ 현실성 낮음	√	○ 시설물 안전관리	
	4. 추진시 기대효과	① 높음 ② 보통 ③ 낮음	√	○ 시설물 안전관리	
청 렬 이 행 관 련	1. 특혜 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무시 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	○ 해당사항 없음	
	2. 절차의 투명성	① 높음 ② 낮음	√	○ 해당사항 없음	
	3. 이의신청의 용이성	① 복잡 ② 단순하거나 시간소요 ③ 단순, 간소함	√	○ 해당사항 없음	
	4. 사전협의 절차 이행 여부	① 절차 이행 ② 필요 없음 ③ 불이행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의견					

##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b>사업명</b>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및 수산시장동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b>발주부서</b>	<b>부서명</b>	<b>시설안전팀</b>	<b>작성자</b>	<b>고정일</b>	<b>연락처</b>	02-3435-0322
<b>계약부서</b>	<b>부서명</b>	<b>재무팀</b>	<b>작성자</b>	<b>류종수</b>	<b>연락처</b>	02-3435-0381
<b>제출일자</b>	2018. 07. .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유무	
		발주	계약
1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공사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	Y/N ■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	Y/N ■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 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	Y/N ■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	Y/N ■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	Y/N ■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	Y/N ■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	Y/N ■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	Y/N ■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	Y/N ■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	Y/N ■ □